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청렴계약제 운영규정

제정 2007. 11. 20 규정 제 25호
일부개정 2019. 4. 16 규정 제18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투명·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장의 직무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단의 이사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직무청렴계약의 체결) ① 이사장은 직무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양주시장과 직무청렴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은 【별표 1】의 직무청렴계약서에 이사장과 양주시장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직무청렴의무가 있는 이사장의 임기개시일로부터 그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본인의 사망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직무청렴의무의 내용) 이사장은 청렴의무사항으로 다음 각항의 금지행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직무 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 ②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 ③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 ④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⑤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⑥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공단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제6조(직무청렴의무 위반심의) ① 이사회는 계약을 체결한 이사장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청렴의무 위반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렴의무 위반혐의 내용이 공단의 이사장으로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 여부
2. 위반혐의 내용이 청렴계약상의 직무청렴의무 금지행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기타 위반혐의 내용과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③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이사장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① 이사장이 직무청렴 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차등 적용한다. <개정 2019. 4. 16>

1. 금고 이상의 형 판결시 : 기본연봉, 부가급여, 평가급을 형 확정 전까지 지급유보하며, 기타 이사회가 의결하는 제재 등
2.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 재직 기간내에 지급된 기본연봉, 부가급여, 평가급을 전액 환수하며, 형 확정이후 형 집행기간 이사장 경력확인발급 정지, 포상 및 파견정지, 기타 이사회가 의결하는 제재 등
3. 자격상실, 자격정지 및 벌금형 확정시 : 재직기간 내에 지급된 기본연봉, 부가급여, 평가급을 50% 환수하며, 형 확정이후 형 집행기간 이사장 경력확인발급 정지, 포상 및 파견정지, 기타 이사회가 의결하는 제재 등

②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유보된 기본연봉, 부가급여, 평가급 등은 이사장의 무죄판결 확정시 지급한다. <개정 2019. 4. 16>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타 이사회가 의결하는 제재는 관련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공단의 인사 및 복지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하여 그 수준을 결정한다.

④ 이사장의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청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 및 이 규정 등에 따라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장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당초 임명일로부터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부 <규정 제186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9. 4. 16>

이사장 직무청렴계약서(제3조제2항관련)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투명한 경영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맑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구현하고자 다음과 같이 상호합의에 의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이사장은 공단을 경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부정행위 등과 같은 부패행위에 연루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 나.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 다.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고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요구하는 행위
 - 라.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 바. 기타 부패방지, 직무청렴, 품위유지 및 공단의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
3. 이사장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양주시장

(서명 또는 인)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명 또는 인)